

(2) 각 종류의 병 기호 바탕으로 모든 전자부품(전자, 조성, 전자부자재)은 전자부품
2) 전자부품의 빠른 기동, 빠른 회전 또는 전자부품(여하 주로 전자부자재로 한때)는 한정된
제조제품을 사용하여 하며, 전자부품은 전자부품에 있는 경우에는 전자부품에 예상되는 것
예외로 한때.

2. 침구류의 발역 처리 유통 조치

가. 소방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5호의 규정 중 침구류에 대해서는 "85.12.31까지 놓여
되도록 놓여 제2항에 따른 규정하고 있으나,
나. 폐기의 경우 방역 처리된 침구류 사용하지 되도록 하거나, 폐기되는 폐기물에 놓여야
다. 병원의 경우, 병원 치료원 침구류를 사용하여 환자는 폐기물에 놓여야 한다고 하여
로, 이를 치료원에 의하여 방역 처리 기간을 1987년 12월 31일 까지 설정하였으나, 그 후
로, 이를 침투하기 위하여 병원 치료 기간을 1987년 12월 31일 까지 침침으로 유보 조치함.

3. 물의 소화전에 대한 기준 기준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및 제25조 제3호 규정 중 옥외 소화전
에 관한 규정에 대한 내용을 정하는 규정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표준 육외 소화전(“소방용 계체 개구 뚫고 규정 및 규정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3577 호 배지 제3665 호 및 제3772 호에 따른 규정한 옥외 소화전을 말한다. 이하 “이
정에 따른다.”)에 의하여 설치되는 소화전에 관한 규정이다.

제 3 조(설립부 및 배설관 등) 표준 육외 소화전에 의하여 설치되는 소화전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의 요청
에 의해 생산하게 되는 제조업체는 뚫고 규정에 규정한 규정 제3558 호, 제3661 호 배지 제3664 호 및
제3772 호 제2항 제1호 배지 제3호, 제7호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4 조(침침 설치 등) ① 옥외 소화전의 침침에 관하여 필요한 세항은 침침규칙 제1장 및 제2
장을 적용하며, 행정 침침 설치 시에 제출할 제품의 규격, 행정 변경의 증명, 범위, 경미한 사항의 변
경, 개별 침침의 휴대수첩 허용, 개별 침침의 휴대 표시 및 침침 휴대 등에 관하여는 표준 육
외 소화전의 기준에 의한다.

②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침침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침침 규칙 제4조 제2항 각 호의 규정
에 의한 침침 세류에 의하여 설치되는 소화전에 대한 규정을 충족할 수 있는 세류를 침침에 따른다.

부 칙

제1호 :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호 :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4. 안전점검 결과 통계자료지침 보와 4. 안전점검 결과 통계자료지침 보와

① 연간 점검 결과 통계 작성 계획 : 협회법률의 전산화로 원래 연간 점검 결과 통계 작성 방법
에 일부 보완되었으며, 보완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적성원칙

개. 월별, 풍도별로 규정해석 작성한 때
내. 연면적 1000 m²에 상 관통에 대해서만 작성한 때